

★ ◎

본부장 방침 제13호

문서번호	시설활용부-149
보존기간	1년
결재일자	2016.01.20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아님

부 원	시설활용부장	시설관리처장	주거복지본부장	
박지현	윤형국	정갑수	이종언	전결 01/20
협 조	파트장 이종영			

## 2016년 시특법 안전점검 계획보고

서울특별시 SH공사  
( 시설지원처 )

# 2016년 시특법 안전점검 계획보고

## 1. 점검의 목적

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시특법”이라 한다.)의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한 「2016년 시특법 안전점검계획」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,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·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관련근거

- 시특법 제4조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 
제6조(안전점검의 실시)
- 동법시행령 제5조(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 
제6조(안전점검의 실시 시기)

## 3. 관리대상 시설물

구 분	단 지 수	시설물수	비 고
대형건축물	1종	1	왕십리모노퍼스(주상복합)
	2종	1	SH공사 사옥
공동주택	2종	241	시특법 대상은 아니나 시설물 중요도상 시특법 대상과 동일하게 관리
건축물옹벽		8	
기 타	금호벽산 옹벽	1	
	신정양천 인공대지	1	
	신정양천 진입로	4	
총 계	123	257	

※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종류

- 1종 시설물 :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㎡ 이상의 대형건축물(철도역 시설은 제외) 및 다중이용 건축물(관람장 제외).
- 2종 시설물 : 16층 이상 공동주택,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,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.

#### 4. 점검종류

구 분	대 상 시 설	실 시 시 기	비 고
정기 점검	1·2종 시설물	반기 1회	육안점검
정밀 점검	1·2종 시설물	2~4년 1회	육안점검 및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
긴급 점검	1·2종 시설물	구조적 손상 등 필요시	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
정밀 안전진단	1·2종 시설물	준공 10년 후 최초 시행 그 후 4~6년 1회 (1종 시설물만 해당) 또는 필요시	정밀한 육안점검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

#### 5. 점검주체(안전점검 책임기술자)의 자격

(2016.01.18 현재)

구 분	자 격 요 건	자격자 현황
정기점검	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·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<u>초급 기술자 이상</u> 으로서 해당분야(토목,건축)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자	시설활용부 : 2명 시설계획부 : 3명 시설지원부 : 2명 주거복지센터 : 3명 (건축 9명, 토목1)
정밀점검 및 긴급점검	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·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<u>고급 기술자 이상</u> 으로서 해당분야(토목,건축)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자	시설활용부 : 2명 시설계획부 : 3명 시설지원부 : 2명 주거복지센터 : 3명 (건축 9명, 토목1)

#### 6. 점검 실시계획

(2016.01.18 현재)

구 분	대 상 시 설	점검 주체	대상 단지	실 시 횟 수		비고
				상반기	하반기	
총 계				257	257	총 576회
정기 점검	1·2종 시설물	자체	123	257	194	1). SH공사 사옥은 총무팀에서 실시 2). 정밀점검의 실시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점검은 생략
정밀 점검	1·2종 시설물	용역	29	-	63	
긴급 점검	1·2종 시설물	용역	-	-	-	
정밀안전진단	1·2종 시설물	용역	-	-	-	

## 7. 점검방법

### 1) 정기점검

#### ① 점검내용

- 자료수집 및 분석 : 준공도면 및 전회점검보고서 내용 파악
- 현장조사 및 시험 : 주요부재의 외관조사(육안검사)
- 상태평가 : 외관조사 등

#### ② 점검결과 작성

-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월별 보고
- FMS(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)에 점검결과 입력

### 2) 정밀(긴급)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
####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시행

#### ② 점검내용

- 자료수집 및 분석 : 준공도서 및 보수이력, 전회점검보고서 내용 파악
- 현장조사 및 시험 : 부재상태 및 내구성 등
-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
- 보수 · 보강방법 제시
- 기타 :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

#### ③ 점검결과 작성

-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FMS에 점검결과, e-보고서 입력

## 8. 점검결과 처리

- 1) 경미한 보수·보강(크랙보수 등) : 각 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실시
- 2) 주요구조부 보수·보강(내력벽 구조내력저하 등) : 정밀안전진단실시 후 보수·보강안을 시설관리팀에서 마련후 담당 센터등과 협의하여 실시
- 3) 하자담보책임기간(10년)이 만료되기 직전에 실시한 정밀점검의 결과로 보수·보강이 필요사항은 해당 시공사에 통보

## 9. 기타사항

- 1) 입주물량 증가(총 123개단지, 257개 시설물, 연2회 점검)에 따라, 주거복지본부내 관련법령 자격자에 한하여 정기점검 참여조치

- 2) 주거복지본부내 관련법령 자격자 추가 및 인사이동에 따라 점검계획 반영조치
- 3) 임대분양 혼합시설물의 정밀점검은 분양측 관리사무소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대금요청시 임대.분양 면적비로 분담하여 지출
- 4)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등이 발견된 경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가능
- 5) 용벽등 토목관련 시설물은 전문성을 감안하여 주거복지본부 시설관리처내 토목직 직원이 정기점검등 조치

붙임 0.2016년 시특법 점검계획\_단지별(1.18). 끝.